



부칙 한국

L-3 윤리강령과 본 부칙은 모든 직원이 L-3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윤리강령과 부칙은 모든 사항을 포함 하는 포괄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 한 경우 법무부서로부터 지침을 받도록 한다.

L-3 의 윤리 및 업무 행동 강령(이하 “강령”)은 회사 직원, 임원, 이사를 포함한 L-3 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 된다. 또한 대행업체, 컨설턴트, 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L-3 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L-3 사의 모든 직원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행동 해야 한다.

특히, L-3 사를 대표하는 모든 개인은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윤리적인 행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 ✓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및 남용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 ✓ 우리의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이행 상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 필요에 따라 조언을 구한다.

요구사항

미국 시민이면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직원은 미국의 법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의 법과 규제를 준수 해야 한다. 그 외의 다른 직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의 법을 모두 준수 해야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법이 적용되는지 확신이 없을 경우, 즉시 법무부서나 해당 상사와 상의 한다.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 본 부칙은 윤리강령의 기존 사항을 보충해 주는 특정분야의 한국의 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부칙은 윤리강령과 함께 사용 되어야 한다.

정부관리를 대상으로 한 선물 및 접대

뇌물

정부관리에게 관리의 업무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혜택이 주어진 경우 뇌물로 간주된다.

경제적인 이익이라 함은 접대, 현금 및 물품, 심지어 골프게임 초대 등과 같은 어떠한 형태든 가치가 있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된다. 여기서 정부관리라 함은 정부 각 기관, 내각의 부처 및 군대를 포함한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의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예이다. 정부관리기업체의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어떠한 단체가 정부관리기업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문의한다.

제공된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준으로 종종 등장하는 것은 제공된 이익이 관례상 제공되거나 사회적인 의례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이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가 있는 경우,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것이 관례이며, 전통적으로 해마다 추석과 설날은 선물을 주고 받는 명절이며, 회사들도 자신의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을 선물로 보낸다. 하지만, 사회적인 의례로 여겨지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그리고 심지어 정부관리에게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적인 비즈니스 관행의 일부로 여겨지더라도 선물을 수수하는 당사자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선물이나 금품수수가 발생한 경우 뇌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금품 수수는 부적절하며 형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반 부패 법과 행동 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의 대통령령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2003 년 5 월 19 일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접대와 관련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관심이 있는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현금, 선물, 접대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를 의미하며, 이해 당사자가 공무원 일 경우는 ‘이해 당사 공무원’ 이다. 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례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물이나 식사の場合は 허용된다. 또한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식사비용과 같은 여행경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모든 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 기준을 우선하지는 않으며 (예를 들면, ‘관례적인 기준’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각 정부기관에 각 기관 별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행동기준을 기관별로 공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정부기관의 개별 행동 강령은 상기에 언급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적인 증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나 이해 당사 공무원이 제공하는 식사, 교통 및 통신비는 3 만원(미국달러, 30 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경조사의 경우는 5 만원(미국달러 50 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의 개별 행동 강령은 해당 기관에만 적용되는 특정 예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응대할 때에는 행동강령은 물론 이러한 정부기관의 개별 행동 강령도 검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현금, 선물 및 접대를 수수한 공무원의 경우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는 “공직유관단체”의 모든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공직유관단체”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및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정부기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업 및 단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단체의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동강령과 유사한 행동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범주에 속하는 단체의 직원을 응대할 때 선물이나 접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와 상의하여야 하며, L-3 를 대리하여 정부관리, 또는 정부관리에게 교통, 숙박 또는 기타 편의가 제공되는 공식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서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

어떠한 개인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배임증재죄에 해당된다.

배임증재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은 법령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선의와 신뢰의 원칙에도 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청탁의 내용과 전달된 자금의 액수, 관련 직원의 청렴함과 그 밖의 사황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이 경우 부적절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수령인이 정부관리 또는 사기업의 직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의 L-3 직원이 한 사람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L-3로부터 해당 비용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이 뇌물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모든 선물의 가치를 합산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당국이 특정 선물 또는 접대를 뇌물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대개 해당 수수 행위 전후의 2~3 년의 기간을 심사하고 뇌물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선물 및 접대의 가치를 합산한다.

외국 정부의 직원 및 관리에 대한 선물과 접대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반부패법’)하에서 법인을 포함한 한국 국민이 부적절한 이득을 위해 해외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고의로 뇌물을 증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 내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증여한 외국인의 경우도 해외반부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각 회사의 대표, 대리인 및 직원이 회사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에 관련된 경우, 실질적으로 뇌물을 증여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 부정행위 공개 의무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은 미국 민사허위청구방지법상의 청구, 과도한 초과지급, 사기, 이해 상충, 뇌물 수수, 또는 선물 규정 위반과 관련한 미국 연방형법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 공개 의무는 계약 종료 이후 3년 동안 지속된다.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L-3의 모든 직원은 형법 또는 민법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사황, 또는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의 과도한

초과지급 내용을 윤리 담당자 또는 기업 윤리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윤리 상담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 경쟁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유통업체의 재판매 가격과 관련하여 유통업체의 독립적인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하는 유통업체에 제품의 공급이나 현금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행위.
- 특별한 상업적 이유 없이, 기존의 고객에게 제품의 공급을 줄이거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의 예를 들면, 고객의 신용이 의심스럽거나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객의 신용이 이미 무너진 경우 등이다.
- 공급업체, 라이선스 사용업체 및 유통업체에게 법무부서의 검토 없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이와 비슷한 제약을 부과하는 행위.
- 유통업체에게 우리 회사의 경쟁사와는 거래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여하한 제품 시장에서 고객을 차별하는 조치. 차별적인 할인을 포함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가격 책정이 가장 흔한 예에 속한다.
- 법무부서와 상의를 하지 않고 유통업체나 라이선스 사용업체에 지역 및 고객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 유통업체의 의사에 반해서 유통업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유통업체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우리회사나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설명, 광고를 하지 않는다.